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통보(시정완료)

제 목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별표 1] 기재 7개 지방자치단체

조 치 기 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별표 1] 기재 7개 지방자치단체

내 용

1. 업무 개요

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별표 1] 기재 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과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 등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이를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하고 있다.

2. 물류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 및 제178조에 따르면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K)가 2016. 4. 22. 관내 때 동 때 건물을 취득하면서 이를 직접 사용한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 7,643,220원을 감면받고도 2년이 지나기 전인 2017. 3. 22. 해당 물건을 매매하여 추징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두는 등 [별표 2] "물류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후 사후관리 부적정 명세"와 같이 추징사유가 발생한 23건, 11명(법인 포함)의 납세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 526,996,50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않고 있었다.

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등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부동산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6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⁷⁸⁾ 이내에 다

⁷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음

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 열거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경영하는 등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 (79)80)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당진시는 창업중소기업인 주식회사 ��⁸¹⁾(대표이사 L)가 2015. 1. 26. 당진시 ◎면 ◎리 ◎ 외 3필지(임야 13,295㎡)를 취득하면서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한다는 사유로 취득세 37,500,000원을 감면받고도 취득일로부터 3년 3개월이 지난 2018. 4. 26. 현재까지 4필지 중 3필지는 공장설비 없이 창고만 건축하여 미준공⁸²⁾상태로 두고 있고 1필지는 공터로 두고 있어 추징요건에 해당되는데도 감면한 취득세 등 58,695,80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M)⁸³⁾가 2015. 8. 25. 및 같은 해 9. 7. 관내 ☑로 소재(☑동 ◢, ▼) 건물(면적 762㎡, 과세표준액 417,600,000 원)과 토지(면적 1,914.5㎡, 과세표준액 1,992,400,000원)를 각각 취득하면서 이를

⁷⁹⁾ 조세심판원은 2013. 12. 13.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조심2013구4077)

⁸⁰⁾ 조세심판원은 2018. 4. 6. 새로운 설비를 들여놓고 종업원을 고용하며 매출도 증가하였으나 그 이유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하던 사업을 승계한 데에서 비롯된 경우 법인의 설립은 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하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조심2017지1108)

⁸¹⁾ 법인설립 등기일은 2014. 12. 19.이고 본점은 경기도 화성시 ▼면 ■로에 소재

⁸²⁾ 조세심판원은 2016. 9. 28. 건축과정이 진행되어 준공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단(조심 20160852)

⁸³⁾ 법인설립 등기일은 2015. 6. 30.이고 본점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로에 소재

직접 사용한다는 사유로 취득세 82,249,920원을 감면받은 후 2016. 1. 29. 토지 1,914.5㎡ 중 638㎡와 건물 762㎡ 중 270㎡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부분도 2018. 3. 31. 현재까지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⁸⁴⁾ 창고로 방치하고 있어 추징요건에 해당되는데도 감면한 취득세 등 67,358,960원(가산세 포함)⁸⁵⁾을 추징하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 지방세무☞ N은 2016. 5. 27.부터 같은 해 11. 25. 사이에 주식회사 ♠♠에 3차례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서 위 업체가「지방세기본법」제83조 등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단순히 전화로만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 연기를 요청하였는데도 임의로 이를 수용하여 2018. 3. 31.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당진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부적정 명세"와 같이 추징사유가 발생한 8명(법인 포함)에 대하여 취득세 등 544,127,81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않고 있었다.

4.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 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따르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부

^{84)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주식회사 ♠♠가 제조업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손 익계산서 등을 검토한 결과, 제조에 따른 매출내역이 없는 등 신발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확 인됨

⁸⁵⁾ 부산광역시 강서구(취득세팀)는 주식회사 ♠♠가 2015. 8. 25. 취득한 건물 762㎡ 중 270㎡를, 2015. 9. 7. 취득한 토지 1,914.5㎡ 중 638㎡를 2016. 1. 29. 서정선에게 매도한 데 대하여 당초 경감받은 취득세 등 82,249,920원 중 23,792,280원을 부과·징수하였음

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8조 제5항에 따르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당진시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O)가 2012. 9. 27. 관내 ㅁ읍 ▶리 일 원에 위치한 ㅁ일반산업단지⁸⁶⁾ 내 633필지(공장용지 6,635㎡)를 취득(경락공매)하면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한다는 사유로 취득세 58,691,770원을 감면받고도 취득일로부터 5년 9개월이 지난 2018. 6. 8. 현재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은채 그대로 두고 있어 추징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두는 등 [별표 4]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부적정 명세"와 같이 추징사유가발생한 8건에 대하여 취득세 등 2,011,381,95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않고 있었다. 87)

5. 농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부적정

⁸⁶⁾ 사업위치: 당진시 ㅁ읍 ▶리·▶리 일원, 사업기간: 2006~2015년, 사업시행자: ㅁ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사업면적: 969,884㎡, 분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분양가격: 223,030원/㎡, 분양률: 81%[(분양대지 42필지 중 34필지 분양(입주 18개 법인, 미입주 11개 법인, 경매·폐업 등 5개 법인)]

⁸⁷⁾ ㅁ일반산업단지 내 34개 법인 중 21개 법인은 유예기간 내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가동(정상영업)을 하였고 2 개 법인은 유예기관을 경과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1개 법인은 유예조건을 미준수하여 당진시는 ♣♣주식회사 등 3 개 법인에 취득세 및 가산세 556,201,250원을 추징하였고 나머지 8개 법인은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공업용수) 설치 지연을 사유로 설치완료 시까지 추징을 유예함. 한편 위 8개 법인은 2017년 8월 기반시설 설치 완료 후 8개월이 지난 2018년 6월 현재까지 위 부지를 유휴지로 방치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제2호, 제2항 그리고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그런데 하남시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P)이 2015. 8. 31. △동 ▲ 외 2필지(토지 1,924㎡, 건물 996㎡)를 취득하고 가공·유통에 직접 사용한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 65,330,000원을 감면받고도 2016. 10. 5. 주식회사 ♡♥에 일부(330㎡)를 임대하여 추징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두는 등 [별표 5]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부적정 명세"와 같이 하남시 및 이천시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4건에 대하여 취득세 등 70,651,33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않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별표 1] 기재 7개 지방자치단체는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고 과세예고 등 부과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앞으로 세무조사 계획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 ① 앞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등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가 유예기간 내 감면조건을 위반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그대로 두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세무조사를 누락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며(주의)
- ③ 추정사유가 발생한 주식회사 ♥♥ 등 12명(법인 포함)으로부터 취득세 등 594,355,460원(가산세 포함)⁸⁸⁾을 추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당진시장은 앞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가 유예기간 내 감면조건을 위반하여 추정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추정사유가 발생한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등 9개 법인으로부터 취득세 등 2,070,077,750원(가산세 포함)을 추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앞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가 유예기간 내 감면조건을 위반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추징사유가 발생한

⁸⁸⁾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2018년 5월 주식회사 ♥♥ 등 11명(법인 포함)에 대하여 부과 및 수납 완료

♣주식회사로부터 취득세 등 139,386,48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이천시, 하남시, 전주시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2018년 5월 취득세 과세예고를 통지하는 등 부과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이천시장, 하남시장, 전주시장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시정완료)]

[별표 1]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 부적정 명세

(단위: 원)

연번	지자체명	유형	납세자명	추징금액	
	계	4개 유형	-	3,162,274,640	
1		소계	-	594,355,460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류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미흡	주식회사♥♥ 등 11명(법인 포함)	526,996,500	
		창업중소기업에대한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미흡	주식회사♣♠	67,358,960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창업중소기업에대한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미흡	-	93,161,010	
		소계	-	2,070,077,750	
3	당진시	창업중소기업에대한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미흡	주식회사 싶슾	58,695,800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미흡	-	2,011,381,950	
4	광주광역시 북구	창업중소기업에대한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미흡	ᄼᆃ주식회사	139,386,480	
5	전주시	창업중소기업에대한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미흡	-	132,836,180	
	이천시		소계	-	104,188,350
6		창업중소기업에대한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미흡	_	61,806,430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미흡	-	42,381,920	
7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하남시 사후관리 미흡		주식회사◇◆	28,269,410	

주: 추징금액은 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와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임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물류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부적정 명세

(단위: 원)

연번	성명(법인명)	취득물건	취득일	추징금액	
계		계 23건	-	526,996,500	
1		-	2012. 11. 1.	47,518,600	
	_	-	2012. 12. 26.	12,890,870	
		-	2012. 11. 1.	48,776,890	
2	-	-	2012. 12. 26.	13,232,300	
3	주식회사 ♥♥	때동 ▦ 건물	2016. 4. 22.	11,168,910	
4		-	2014. 9. 11.	11,813,630	
4	_	-	2016. 4. 22.	5,704,390	
5	-	-	2016. 4. 22.	12,404,710	
6	-	-	2016. 4. 22.	11,019,660	
_	-	-	2014. 9. 11.	20,209,670	
7		-	2016. 4. 22.	5,151,420	
	-		-	2014. 9. 11.	43,019,430
			-	2016. 4. 22.	10,583,770
8		-	2014. 9. 11.	20,311,920	
		-	2016. 4. 22.	4,997,950	
	_	-	2014. 9. 11.	86,038,890	
9		-	2016. 4. 22.	19,234,010	
10	_	-	2014. 9. 11.	19,542,950	
10		-	2016. 4. 22.	12,132,200	
	-	-	2014. 9. 11.	43,019,430	
44		_	2016. 4. 22.	12,658,760	
11		-	2014. 9. 11.	43,019,430	
		_	2016. 4. 22.	12,546,710	

주: 1. 추징금액은 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임(2018. 5. 18. 기준으로 산정)

자료: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출자료 재구성

^{2.} 감면물건이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에 신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직접 사용 시작일로 보아 법정기간을 산정함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3319 판결)

[별표 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부적정 명세

(단위: 원)

연번	지자체명	성명(법인명)	취득물건	취득일	추징금액
계[6개 관서 8명(법인 포함)]			-	-	553,244,860
1	당진시	주식회사 싶슾	당진시 ⊠면 ⊠리 쬢 외 3필지	2015. 1. 26.	58,695,800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계			-	-	67,358,960
2	부산광역시	주식회사♣♠	강서구◎동 ◢ 외 2필지	2015. 8. 25.	67,358,960
	강서구		강서구 ☑동 ⊿ 소재 건물	2015. 9. 7.	07,330,900
	광주광	역시 북구 소계	-	-	139,386,480
			_	2016. 3. 31.	24,995,360
3	광주광역시	♠ <mark>주</mark> 주식회사	-	2016. 3. 31.	23,223,100
3	북구		_	2017. 2. 17.	5,179,070
			-	2017. 2. 17.	85,988,950
	 전	주시 소계	-	-	132,836,180
	전주시	-	_	2014. 12. 9.	41,730,850
4			_	2016. 4. 26.	5,408,790
			_	2016. 4. 26.	1,156,310
			_	2016. 8. 30.	33,467,250
5		_	-	2016. 12. 30.	4,588,340
			-	2016. 12. 30.	602,640
6		-	-	2016. 9. 30.	45,882,000
7	울산광역시 울주군	-	_	2013. 10. 30.	93,161,010
이천시 소계			_	-	61,806,430
8	이천시	-	_	2015. 8.10	37,639,110
8			-	2015. 8.10	24,167,320

주: 추징금액은 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와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임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4]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부적정 명세

(단위: 원)

	성명 (법인명)	취득물건	취득일자	추징금액			
연번				<u></u> 계	취득세	신고불성실 기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8명(법인 포함)]				2,011,381,950	1,359,229,670	271,845,900	380,306,380
1	-	-	2012. 7. 31.	893,417,470	597,044,560	119,408,910	176,964,000
2	-	-	2012. 9. 27.	625,570,280	423,054,230	84,610,840	117,905,210
3	-	-	2012. 7. 2.	126,840,950	84,290,910	16,858,180	25,691,860
4	-	-	2012. 10. 4.	122,785,950	83,137,630	16,627,520	23,020,800
5	주식회사 &&	ጆ 리 633	2012. 9. 27.	86,470,580	58,691,770	11,738,350	16,040,460
6	-	-	2014. 6. 20.	76,383,490	59,239,570	11,847,910	5,296,010
7	-	-	2012. 8. 10.	40,025,680	26,801,720	5,360,340	7,863,620
8	-	_	2012. 9. 27.	39,887,550	26,969,280	5,393,850	7,524,420

자료: 당진시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5]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부적정 명세

(단위: 원)

연번	지자체명	법인명	취득물건	취득일자	추징금액
계(2개 관서 4개 법인)			_	-	70,651,330
이천시 소계			_	-	42,381,920
1	이천시	_	_	2017. 5. 8.	690,270
			-	2017. 5. 8.	14,450,480
2	이천시	-	_	2014. 5. 1.	8,139,560
3	이천시	-	_	2016. 11. 16.	19,101,610
4	하남시	주식회사◇◆	쇼동 ▲ 외 2필지 (토지1,924㎡, 건물 996㎡)	2015. 8. 31.	28,269,410

자료: 이천시, 하남시 제출자료 재구성